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8. 17 선고 2023가단1481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 고 A(변경전: B)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균

피 고 주식회사 C

변 론 종 결 2023. 7. 13.

판 결 선 고 2023. 8. 1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55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다툼 없는 사실, 원, 피고가 제출한 서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2015. 6.

14. 피고로부터 고압세척기를 매수하는 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한 후 약정 매매대금 90,310,000원의 일부인 55,000,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.

원고는 선택적으로, ①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6. 4. 12.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원상회복으로(원고는 부당이득반환이라고 주장하나 원상회복임) 그 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, ②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지급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거나, ③ 피고의 위와 같은 매매대금 수령행위가 사기의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그 지급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.

살피건대, 피고는 그 수령한 매매대금 55,000,000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다른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주장하며 을 제1호증(전자세금계산서)을 제출하였는바, 위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.

가사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, 위 ③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, 위 ①, ②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상행위인 이상 그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,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모두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되므로(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다21569), 원고의 해당 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. 2. 17. 이전에 이미 5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(기록상 피고의 채무승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).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.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 조중래